

<20> 醫療關係法에 있어서 放射線士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고찰

목포전문대학 방사선과
임 창 선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행동이므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게 법률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기술은 날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의료의 영역은 점차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의료보험 제도의 시행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확대에 따라 의료 이용량의 양적인 팽창은 병원조직체계에 있어 업무의 분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되어, 의사 단독으로는 의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료관계자의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를 보면 그 업무영역은 점차로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럴 전망이다. 따라서, 의료관계법규상에 나타난 방사선사의 지위와 임상에서의 실제의 역할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醫療關係法規를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우리 의료기사법상의 의료기사는 국가공무원의 한 官名도 아니며, 기술계 기술자격의 등급도 아니고, 의료기사법시행령에 규정된 바 소정의 전문영역을 가지고, 그 업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전문기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技師”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방사선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 받는 것이므로, 특정 업무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사선사가 행하는 그 방사선 업무자체에 대하여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의료업무가 폭주하는 현실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의료기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도”는 “의뢰”로 하거나 현재의 의료현실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여 의사·치과의사와 방사선사 사이에 보다 상호 협조적이며,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화와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방사선사의 업무행위는 그것이 ① 사람의 疾病의 診斷, 治療에 向하여진 行爲이며, ② 그 行爲가 現代醫學의 原理에 따라 이루어 지는 醫療技術行爲이며, ③ 방사선사가 行하지 아니하면 保健衛生上의 避害를 생기게 할 兪려가 있는 行爲인 점과 1981년 12월 31일 개정 이전의 의료법에는 제 59조 2항의 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보아 방사선사의 업무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